



제418회국회(임시회)
제7차 정무위원회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앙행정기관 내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진종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74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중앙행정기관 내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진중오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16.
3. 회 부 일 : 2024. 8.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정부의 전체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분야별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이 주기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과 요구를 상향식으로 개진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부재한 상황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가 및 청년 대표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며, 정기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년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청년의 요구와 필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중앙행정기관 내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개정안은 각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 전문가 및 청년 대표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를 두고, 청년정책위원회가 소관 청년 정책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청년정책위원회의 정기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의 제도개선과 관련한 사항을 청년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13조의2).

현행	개정안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생략)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②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 <u>사항(제13조의2제7항에 따라 청년정책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건의한 청년정책의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한다)</u>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u><신설></u>	제13조의2(청년정책위원회) ①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청년정책에 관한 청년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위원회가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청년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중앙행정기관에 한정한다)

2.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청년정책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는 위원 한 명이 공동으로 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3.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청년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위원 중 기관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6개월마다 1회, 임시회의는 공동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⑥ 청년정책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청년정책위원회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청년정책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해당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청년정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위원장), 관계 중앙부처 장관,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두고(법 제13조),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청년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된 지방청년정책위원회를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두도록 하고 있음(법 제14조).¹⁾

- 1) 「청년기본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둔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

- 그러나, 개별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청년정책에 대하여 청년정책 전문가 또는 청년단체 대표 등 청년 대표가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과 요구를 주기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미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각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별 부처의 소관 분야별 청년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청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의 의견을 청년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임.
- 구체적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각 중앙행정기관에 소관 청년정책에 관한 청년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를 두고(안 제13조의2제1항), 중앙행정기관 소관 청년정책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2항).
-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는 위원 1인이 공동으로 되며,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각

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청년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3항).

- 청년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6개월마다 1회 개최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한 결과를 청년정책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제5호, 제13조의2제5항 및 제7항).

- 아울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4항, 제6항 및 제8항).

□ 다만, 개정안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에 신규로 설치하려는 청년정책위원회는 그 역할과 기능이 정부에서 이미 추진 중인 청년보좌역 등의 청년 참여 정책과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²⁾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각 행정기관에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다수 설치될 경우 비효율이 야기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신규 설치에 기존 위원회와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함.

○ 그런데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2024년 8월말 기준 위촉직 위원 18명 중 13명(72.2%)이 청년 대표이자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년기본법」 제13조제7항³⁾에 따라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어 청년정책 분야별 자문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2023년 3월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가 의무화되었고, 202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에 청년

3) 「청년기본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보좌역 및 2030자문단을 설치하는 등 청년의 국정참여 기회가 다수의 경로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은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부위원회의 청년참여 의무화 등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참여가 이미 제도화되어 운영 중으로 개정안의 청년정책위원회는 이와 역할·권한이 중복되므로 청년정책위원회 신설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각 중앙행정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⁴⁾할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도 청년의 참여 확대라는 입법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원회의 신규 설치보다는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청년을 포함하여 균형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111

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